

출석인정(일반공결) 신청 안내

○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

순	출석인정 사유	구분	신청 자격	신청기한	신청학생 제출서류	비 고
1	교육과정운영	현장견학(실습)	학과의 현장견학 또는 현장실습 참여	결석일 전 1주일 이내	제출서류 없음	
		국고사업의 공식행사	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참여	"	제출서류 없음	
2	학교대표로 대회 참가		학생 운동선수에 해당 학교대표: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	"	제출서류 없음	학과에서 공모전 또는 대회에 출전한다고 학교대표가 아님.
3	법령에 의한 의무이행		예비군 훈련 참여, 군입대 시험 응시 등	결석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	예비군 훈련 확인증,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등	재판으로 인한 법원출석은 미해당
4	본인의 상해나 질병		병원 입원 (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포함)	"	입원확인서 코로나19 관련자: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서류	단, 입원이 아니어도 전염성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경우 공결처리 가능
5	가족의 사망		(외)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 사망(공휴일 포함 5일 이내) 형제자매 사망(공휴일 포함 3일 이내)	"	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	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
6	학생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		학생 본인의 결혼(공휴일 포함 5일)	결석일 전 1주일 이내	청첩장	
7	생리로 인한 공결(보건공결)	여학생		결석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	제출서류 없음	

상기 모든 공결사항은 **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음.**

(예: 주 1회수업(15회수업)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, 현장실습 등 사유로 4회 공결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업일수 1/3 이내인 5회까지만 공결처리 가능)